

2021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안내 및 공고 [하반기]

2021. 9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를[첨부양식] 제출해야 함

2. 기본요건

- 가.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 이어야 함
- 나.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다.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라.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
 -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 접수방법

가. 신청 접수기간 : '21. 10. 5(화)~10. 18.(월)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신청접수 문의

담당자	전화	E-mail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문의는 070-7703-6366

다.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구분	신규 신청서류	비고
1	우선구매 신청서	
2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 신고서(개인사업자)
3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특허로' 에서 출력
4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 서류제출 '키프리스'에서 출력
5	신청제품설명서	- 제품특징 및 제품규격을 명시하고, 타제품과 비교하여 설명
6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 신청한 제품의 카탈로그 및 사진만 제출 * 타 제품이 포함된 카탈로그 및 사진 제출 시 심사단계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음
7	신청제품 규격목록	- 신청제품 각각의 모델(물품번호, 물품식별번호) 및 용도에 관련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됨
8	시험성적서 및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자료	
9	신청확인서	
10	동의서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특허등록원부상 공동특허권리자 및 전용 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자일 경우 작성 필요
11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12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신청년도)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신청년도)	
14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해당 신청년도)	
15	심사가점 및 타 기관 인증 증빙서류 *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제출파일 서식은 사업신청 시스템 사업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 본 구비서류는 모두 필수 구비서류임(미비사항 없이 모두 업로드)

라. 서류심사 면제 및 발표심사 가점 부여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제품혁신(舊 지식재산 활용전략)지원사업 수혜 기업이 지원제품을 대상으로 우선구매추천사업을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2018~2020) 이내의 수혜기업
- 최종평가(우수,적정,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 가점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은 항목구분 없이 합산하여 최대 5점 이내로 인정

① 수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 사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2점)
② 정부지원(1점)		특허기술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금융 연계 지원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되어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된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계약(통상실시, 전용실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원한 경우(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기준)
③ 신청인 자격(1점)		창업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 유공자가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술 개발제품 (3점)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GS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과학기술기 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기타 (1점)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인증(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 마크

※ ③ 신청인 자격 : 창업기업

증빙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https://cert.k-startup.go.kr>)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 양식'의 경우 최대 20개 기관까지 작성

○ 우수발명품 선정 후 구매추천 공문을 발송하기 위함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해당 제조 공정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협약서, 계약서, 협력업체 공장등록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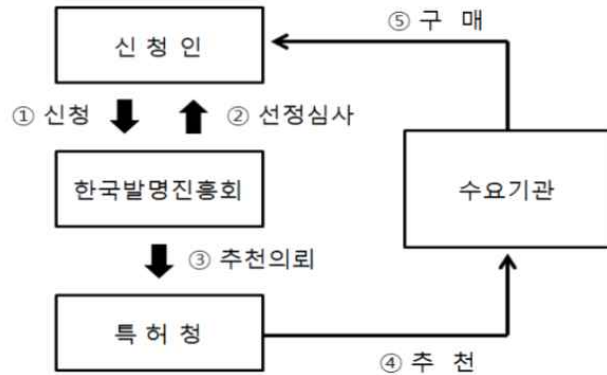
라.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 디자인)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함

마. 본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해당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허청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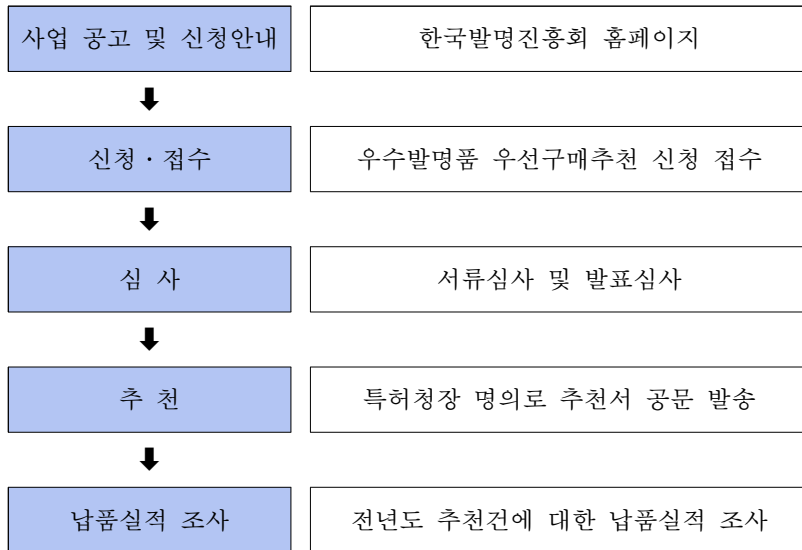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다. 추천 절차



라.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 *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보증 판단서류 : 신청제품의 모든 모델명 및 용도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증빙서류[필수]
 - * 선정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항목 점수 인정

5.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6.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업)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라.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전년도 직수출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마.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바.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사.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하반기 일정

- 신청접수 : 2021. 10. 5.(화) ~ 10. 18.(월) 18:00까지
- 서류심사 : 2021. 11월초
- 발표심사 : 2021. 11월말
 -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발표심사 진행. 심사 날짜 및 시간 지정불가.
기업별 발표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최종 결과통보 : 2021. 12월초 이후
- 확인서 및 추천공문 발송 : 2021. 12월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수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심사 방식을 서면 또는 온라인 심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
-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 우리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 , ) 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다. 이의신청 및 처리

-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 할 수 있다.

라. 신청서 수정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KIPA 사업신청내역에서 수정



※ 유효기간 및 연장

- 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함(최대 6년: 최초 3년+연장 3년)
- 나.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
- 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방식을 준용하며, 연장 신청가능기간 동안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작성하여 첨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페이지에서 수시접수 진행(사업신청(연장)) 메뉴

라. 신청 및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 비교표

신규 신청서류	연장 신청서류	동일성 확인
우선구매 신청서	우선구매 연장신청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특허등록원부 (연장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특허권리 유지여부 및 변경사항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등록특허공보 사본 (연장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특허권리 변경사항
신청제품설명서	신청제품설명서	제품특징 및 제품규격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제품특징 및 제품규격
신청제품 규격목록	신청제품 규격목록	제품특징 및 제품규격
신청제품 규격목록 관련 증빙서류 (시험착저서 제품성능 인증서 등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신청제품 규격목록관련 증빙서류 (시험착저서 제품성능 인증서 등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제품특징 및 제품규격
신청확인서	신청확인서	-
동의서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동의서 (연장 신청일 기준30일 이내)	-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중소기업 변경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해당 신청년도)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연장 신청년도)	사업자 변경 여부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해당 신청기간 내의 증빙서류)	지속적 제품 생산가능 여부
증빙서류(심사자검)	증빙서류(우선구매추천 확인서)	-